100.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록사항변경 신청

□ 민원 처리현황

담당부서	민원지적과	처리기간	즉시(4시간이내)	수수료
근거법령	법인 아닌 사단·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			없음

□ 민원인 구비서류

○ 변경사항 증빙서류 1부
〈예시〉 변경사항이 기재가 된 등기부등본 등

□ 민원처리 흐름도

○ 신청서 제출 → 구비서류 검토(담당자) → 민원 접수(접수담당자) → 등록사항변경입력

□ 심사기준

○ 신청서 기재 내용과 첨부 서류 내용의 부합 여부

□ 유의 사항

○ 사단(재단)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사항 변경신청

□ 문의처

부서명	전화번호	비고
민원지적과 지적정보담당	930-3204	